

博物館의 研究機能과 研究職

李 蘭 曉*

目 次

- | | |
|--------------------|----------------|
| 一、박물관의 연구기능과 학예연구직 | 三、대학박물관과 연구직양성 |
| 二、학예연구직의 양성과 재교육 | 四、맺는말 |

一、博物館의 研究機能과 學藝研究職

1984년 12월 31일 法律 제3775호로 우리나라에 서도 博物館法이 制定公布되었다. 이 法은 세계 최초의 박물관법인 영국의 「The Mseum Act of 1845」에 비하면 무려 140년이 뒤지는 것이나 오랜 소망 끝에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시기에 公布된 最初의 博物館法이라는데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英國은 이미 1845년 이시기에 박물관은 하나의 公共기관이며 市民教育의 기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公費로서 건설 유지할 수 있도록 法으로서 뒷받침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서도 첨단을 가는 英國의 博物館이나 博物館學의 발전이 단지 법의 혜택만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국력과 국민의 意志와 法的 뒷받침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이 할 수 없는 염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박물관법은 1970년대 초기에 一次로 추진한바 있었으나 뚜렷한 결실을 뱋지 못하고 있었다. 필자는 1975년 6월에 있었던 大學博物館協會의 學術講演會에서 박물관법 제정에 관하여 그 필요성을 지적한바 있다. 그 당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박물관법은 박물관振興法의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함을 주장한바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1. 시설의 기준을 정하고 박물관자료의 자유로운 확보방안을 보장해 줄 것
2. Curator의 자격을 규정하고 신분을 보장해 줄 것
3. 전문직 양성을 위하여 대학의 교과 과정을 개편 검토하여 줄 것
4. 박물관자료의 복제, 이용 규정을 정하도록 할 것
5. 대학박물관의 확충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것
6. 박물관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
7. 세계박물관과의 교류를 뒷받침하여 줄 것
8. 국공립의 박물관을 법에 의한 설립기구로 할 것

* 國立中央博物館 美術部長

9. 재정 세제상(稅制上)의 혜택을 줄 것

등등 이었다.

1978년 6월 다시 박물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공청회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여各界의 의견과 정부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한 후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980년 10월 국회의원의 임기종료로 인하여 폐기된바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1984년 12월 31일자로서 공포되었으나 그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부축에 명시되었다. 그 이유는 일부 시행령의 제정이 필요한 까닭이었다. 또한 제5조 즉 學藝職員의 배치에 관한 조항은 다시 이 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다. 이는 그만큼 學藝職員의 문제는 가벼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우리나라의 박물관법을 보면 그 제3조에 박물관의 사업을 규정하여 박물관 資料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그리고 또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 조사연구와 保存 展示에 관한 技術的인 調査 研究라하여 博物館에서의 學術的 研究와 技術的인 研究를 놓았고 있다.

박물관의 歷史를 살펴보면 초기의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하여 애초의 Museion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후 차츰 展示 즉 밖으로 들어내서 보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오다가 近來에 이르러 이곳은 교육적인 기능이 발휘되는 곳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英國의 博物館法이 公布된 후로는 박물관이란 사회교육기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박물관에 수집된 자료들은 그것이 바탕이 되어 많은 분야에서 학문적인 발전과 成果를 이룩하였다. 덴마크 박물관의 先史時代 考古資料에 의한 考古學의 成果를 비롯하여 각지의 민족학박물관 자료가 인류학 민족학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여 研究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크게 부각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박물관은 社會教育기관이라고 규정하거나 또는 단순히 研究기관이라고만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이 분명해진 셈이다. 즉 엄격히 말해 사회교육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바탕에는 研究라는 행위에 의한 結果가 깔려있지 않다면 그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의 일이다. 또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박물관의 기본 기능에서 展示 행위는 뺄 수 없는 사실이므로 그 연구결과는 반드시 展示라는 행위로 나타나야만 한다. 그러므로 박물관이 그 어느 한쪽에 重點的으로 관심을 기울인다하여도 항상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교육기관으로의 성격이 강하다 할지라도 연구를 겸해야 하고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둔다하여도 전시행위를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특수한 기관이다. 결국 大學이 대학이듯이 박물관은 박물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박물관일 따름이다.

이제 박물관의 연구기능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박물관의 연구활동은 특수한 경우에 놓여 있으므로 대학에서의 연구활동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박물관에서의 연구는 資料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創造

의인 새 理論의 展開보다는 물건 중심의 결과가 되어야 하며 비약적인 論理 보다는 資料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며 그러한 결과들은 박물관의 사업(展示나 다른 教育的 活動)에 反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研究는 각기 그 박물관이 지니고 있는 관계자료에 의한 것을 뜻한다.

또한 技術的인 研究라는 것도 우리는 두가지 側面에서 살펴 볼 수가 있겠다. 즉 관계가 있는 資料 中心의 學術的研究 이외에 이론과 Museology에 대한 과학적인 추구와 함께 기술적인 Museography에 대한 研究가 긴요하게 되었다. 적당한 우리말이 아직 定立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뚜렷이 區分하기도 어려워 博物館學이라고 一般的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Museology는 박물관에 관한 科學的 理論과 함께 教育學의 理論의 確立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말은 박물관에 관한 社會的 適應度가 높아지고 社會가 변천함에 따라 박물관의 정의나 기능도 그에 부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科學的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된 박물관의 실제 운영에 관한 전반적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Museography라고 정의하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 즉 Museography란 자료의 수집 保存 管理 Security등에서 시작하여 전시기술 보급 교육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기술등을 총망라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어째튼 현재의 단계로서는 Museology와 Museography를 확연히 나누어 말하기 곤란하나 理論과 實際라는 큰 티두리로 생각하여 큰 잘못이 없으리라 믿는다.

우리나라의 박물관법 제5조에는 學藝職의 배치에 관하여 박물관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조사 연구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學藝職員)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자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였다.

이 학예직은 결국 박물관의 3大구성 요소의 하나로서 시설과 자료와 사람의 主軸이 된다는 사실을 명기한 것이며 學藝職은 그만큼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또 그만큼 신분의 보장이 이룩되어야 함도 중요한 사실이다. 이들 전문직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Curator라는 말로 대표되었으며 그들의 임무는 막중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래 박물관의 교육적활동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활발해지고 한사람의 Curator가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광범위해 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Curator의 담당업무가 세분화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통털어 學藝職員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들 전문직에 대한 자격규정이 일찍부터 制度化한 영국에서는 그들을 Diploma와 Certificates로 크게 나누어 자격 결정과 면허제도를 수립 시행하여 오고 있다. 미국에서도 Curator와 Educator로 크게 나누어 박물관 전문직의 업무를 분담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Educator는 지금까지의 Curator가 미약하게 다루어 왔고 박물관 기능중에서 크게 두드러지기 시작한 교육적 기능을 전담하는 전문직이 되는 셈이다. 때로는 Museum Teacher라고 부르기도 하며 제도적으로 교육담당부서가 독립하여 업무를 추진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Curator Department에서 Education과 Institution의 두파트로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에서는 통털어 學藝員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가 될 것이며 이러한 예로

써 學藝職員이 普及教育분야의 업무를 경시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다소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며 現代社會가 요구하는 박물관의 기능을 감안할 때 당연히 전문적으로 세분함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 말은 Curator로서의 研究를 보다 깊이있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Curator에 대하여 우리들은 그 자격요건이나 기능분담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명확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대체로 Curator는 그 초기단계에서는 學藝庶務 資料整理 등 기초적인 업무에서 출발하여 제2 단계가 되면 자료의 수집 교육보급 전시구 성등에 임하게 되며 3단계에서는 운영전반 기획등에 대하여 그 담당업무가 발전하여 간다. 그러므로 이들은 개인적인 전문연구나 공동의 기술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단계에 따라 일정 자격과 수준이 요구된다.

개인적인 전문성에 대해서는 관계전문 분야의 실력이나 수준을 뜻하며 단적으로는 대학에서의 강의가 가능한 정도 이상의 능력을 요구한다. 즉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 철저한 조사연구가 행해진 연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전시하고 박물관 이용자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관계자료는 물론이고 인접분야에까지 정리, 해석, 이해가 가능하도록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시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설과 설명이 가능하고 전시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자료를 중심으로 완벽한 연구가 이루어진 뒤에라야 하는 것이며 전시실 하나하나는 담당전문적 Curator의 실력과 능력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는 현재의 전시실 운영이나 자료의 관리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장차의 문제에 까지도 巨視的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Curator의 연구과제는 가장 먼저 박물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과 학문적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박물관 사업에 반영하기 힘든 分野라면 Curator로서의 자격에는 위선 한계성이 따른다는 뜻이다. 따라서 연구성과가 박물관 사업에 응용되도록 연구과제에 제한을 받는 것은 Curator의 필연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문적 성과가 아무리 뛰어나고 크다 할지라도 위선 박물관의 전시활동에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사실에 입각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논리나 학계에서 공인된 사실이 아니면 일단 전시행위는 삼가야 하는 학자적 양식이 요구된다. 이것이 大學에서의 研究활동과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밖에도 Curator는 다른 기관에 있는 관계자료에 대하여서도 정확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박물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부의 전문가에게는 항상 지도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양성이나 재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기도 한다.

또 공동의 기술적 연구에 대해 우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가 있다. 즉 Museology에 해당되는 박물관학 이론과 Museography에 해당되는 박물관 활동실무에 관한 사항등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研究나 探求가 요구된다.

이러한 엄격한 자격 요건에 견주어 그들에 대한 신분상의 보장도 역시 중요한 사항이다. 먼

저 Curator는 채용당시에 관계분야의 전문성을 지니면서 관계인접분야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을 지닌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전문연구나 공동연구 기술습득에 대해 폭넓은 기획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들의 연구성과는 박물관 사업에 반영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박물관 主體性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外部에서의 協力者 參加者の 지원과 참여를 인정하고 그 성과를 박물관 사업이나 업적으로 활용하여 특별전시 간행물 발간 기타의 행사로 공표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자료의 안전관리에 끗지않게 자료를 다루는 Curator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시설 기재 보험등에 특별한 배려가 뒤따라야 하겠다.

일찌기 1954년 4월 헤이그의 유네스코 총회에서 협정된 「전쟁에서 文化遺產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간의 협약」에서는 비록 戰時下에서 할지라도 文化財의 약탈 奪取 不法使用 징발등을 금하여 그 보호를 위한 국제간의 협약이 成文化되었다. 그를 위한 특별 안전조치중에는 이 일에 종사하는 관계요원 역시 敵對國下에서도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박물관이나 유사기관에서 그러한 문화유산을 다루는 이른바 사람의 중요도와 그 업무의 독립성을 강조했다는 사실로서 더욱더 우리의 주의를 상기해야 할 점이다.

二、學藝研究職의 양성과 재교육

학예직의 배치를 규정한 우리나라의 박물관법에서 그 자격과 양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이 法 전체는 公布후 다시 6월이 지나야 施行되고 또 이 학예직 배치에 관한 조항은 그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附則에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아직 그 施行組則이나 더욱이 학예직의 자격이나 양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안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다른 나라의 예를 몇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51년 박물관법이 공포되면서 각 대학에서는 이른바 學藝員課程이 생겨 전문가를 양성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문직 즉 학예원은

1. 學土學位를 지닌자가 文部省令에 의한 박물관학관계 科目的 單位를 획득한 자

2. 대학 2년이상의 학력으로 박물관학 관계과목 62單位를 획득하고 3년이상 學藝員職에 근무한 자

3. 기타 文部大臣이 인정하는 學力과 경력을 지닌 자

등이 국가시험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학예원과정을 가진 대학의 課程은 지나치게 자격취득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Museology에 力點을 두는 경향이 강하여 實務 技術에 관한 즉 Museography에는 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학예직의

능력평가에나 수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이를 전문직에 대한 자격규정이 일찍부터 制度化한 영국의 경우 그들은 Diploma와 Certificates의 두갈래로 크게 나누어 자격결정과 면허제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즉 1845년 「The Museum Act of 1845」로서 박물관은 People's University라 明記된 이래 박물관건립을 권장하는 법률이 공포되고 人口 1萬이 넘는 Town Council에는 1파운드 당 반페니의 地方税를 승인하여 박물관건립을 권장하였다. 1850년에는 시의회에 公共圖書館과 博物館을 건설하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다시 1892년에는 「The Public Library Act of 1892」로서 도서관과 박물관의 無料利用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사이 1889년에는 Museum Association을 창설하고 1931년에는 이 Museum Association에서 박물관 전문직원의 면허수여검정시험규칙에 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계획안에 따라 1938년 부터는 제도적으로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앞에서도 잠시 소개한바대로 여기서는 전문직을 Diploma와 Certificates로 구분하여 강습 시험 실지훈련등을 거쳐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다. 강습은 수강자의 수준에 따라 초등부 고등부 專科部의 3단계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희망자는 우선 후보학생으로 등록하여 協會가 委託한 博物館學 강습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들은 박물관의 관리운영방법 기술전반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전공의 科目은 考古學 美術史 歷史 民族學 地學 動植物學 醫學등 박물관관계 학과가 되며 3단계의 강습은 1년 간격으로 행하여 진다. 이 과정을 끝낸 수료증서 소지자만이 시험자격을 획득하는데 이 시험은 筆記 口述 博物館技術實際 博物館事業에 관한 論文 수험자의 實習 實例등이며 이 시험에 합격하여도 協會가 인정하는 博物館이나 美術館에서 3년이상 근무한 후에라야 免許證을 을 交附받게 된다. 대학에서의 관계학과 단위를 끝내므로서 자격을 획득하는 일본같은 경우와는 매우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0세기 初 이미 Museologie가 중요한 科目으로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루-불美術館 부설 「Ecole du Louvre」은 인문과학계 박물관 지망자를 위한 대학의 구실을 하는 한편 현직에 있는 박물관 전문직의 연수기관으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미 1927년에 개설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곳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博物館學 開講大學에서 양성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전공학문분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碩士課程 이상에서 시작하여 大學에서는 Museography중심이나 大學의 부속박물관이나 아니면 다른 박물관에서 실제 실기를 실시하여 일반과정의 碩士과정보다半年내지 1년의 現場실습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문직 양성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기구가 全無하여 우선 박물관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경험을 주로하는 글자 그대로 Self-training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따라서 현 단계로서는 정규 박물관학 코-스도 없고 단지 소수의 전문직이 재직중에 외국에서의 박물관학 과정을 이수했거나 재훈련과정을 거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公布하기에 이른 박물관법에 따라 수준높은 자격을 갖춘 전문 학예직원의 배치

를 위해서는 자격규정에 앞서 그 양성대책이 강구되어야만 장차 발전할 박물관들이 인적 구성 요소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양성대책을 위하여 세계박물관협의회(ICOM)에서 일찍부터 검토되어 온 양성과정의 교과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의 개념 역사와 기능
2. " 조직 운영 관리
3. " 시설
4. 박물관 자료의 수집 정리
5. " 조사 연구
6. " 보존관리
7. " 전시기획
8. 박물관과 공중과의 관계
9. 박물관의 문화 교육적활동 등으로 나누어 진다.

여기서 보면 Museology와 Museography를 염격히 따져서 나누었다가 보다는 섞어서 짜여진 과정으로 보이며 오히려 Museography에 더 치우친 감이 있다. 이러한 점은 개인 각자의 전문 분야에 관한 수준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단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박물관에 Curator로서 출발한 다음에도 초기단계에서의 학예서무 자료정리등의 업무에서 차츰 중간 레벨의 Curator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 이때가 되면 좀더 박물관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느끼게 되며 정규 Curator로서의 발전을 굳히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큰 박물관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직에 分野가 다르거나 담당업무가 달라져 체험만으로는不足하게 됨도 당연한 현실이 된다. 게다가 박물관은 끊임없이 발전 변화하는 곳이며 현대사회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理論 참신한 技術이 필요해 지며 그것은 어떤 方法으로든 充足되어야 박물관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른바 중간 레벨에 있는 전문직의 재교육 재훈련의 필요성이 역설되기에 이르렀다. 이 재교육 재훈련에 의하여 그들은 展示의 기획, 박물관의 관리운영등 총괄적인 기능을 갖추어 박물관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役割을 수행할 수가 있는 빠른 길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몇가지 事例를 소개하여 참고로 하고자 한다.

1980년 6월초 아세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文化活動의 주역이 되는 박물관의 人材양성 및 육성에 관한 문제로서 박물관 중견직원의 연수를 실시키 위하여 기획 교과과정에 대한 Planning Meeting이 東京 京都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는 India, Indonesia, New Zealand, Philippines Thailand 그리고 日本과 韓國등 아세아 태평양지역 중요국가의 박물관장들이 회동한 적이 있다. 이때 이른바 중간직원의 범주와 교과과정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라와 박물관에 따라 사정이 다르므로 몇가지 의견이 대두하였으나 우선 40세미만 3年 이상 박물관 종사자로 정의하였다. 물론 이 훈련의 실시단계에서는 영어가 가능하고 장차 박물관에 계속 근무하므로서 박물관 운영

의 중심이 될 사람으로 더 구체화하였다.

즉 박물관의 기획 운영에 종사하고 박물관 관계학문의 전문가로서 적어도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다. 비교적 큰 나라 큰 박물관과 규모가 작은 경우 여건이 다르기는 하나 많은 의견에 따라 훈련참여 조건은 3년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가까운 예로 미국 뉴욕의 Metropolitan Museum에서는 學士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가 Curator Assistant에서 시작하여 3년 간격으로 Assistant Curator와 Associate Curator로 옮아가는 기본제도에도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어제튼 이 회의에서 제안 토의된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

1. Introduction to Museology
2. Administration & Management
3. Acquisition of Museum Material
4. Preservation of and care for Museum Collection
5. Research & Studies on Museum Collection
6. Exhibition of Materials
7. Education & Publicity Activities

기타 Orientation, Excursion등이 포함된다. 역시 Museology와 Museography를 고루 교과과정에 넣어 강의와 실습이 병행하여 25일간 집중적으로 실시케 하였다. 담당교육관은 지역적 특성이나 기타의 문제를 감안하여 실기실습은 주로 일본내의 박물관 관계자가 主軸이 되었으나 다른 나라이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하기로 하였다. 이 훈련계획은 그후 1983년 10월에 일본에서 개최되어 한국에서도 참가하였다.

이때의 실기실습은 人文社會係 自然係 博物館을 고루 거치도록 하였으나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된다. 가능하다면 좀더 박물관 성격에 따라 細分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프로그램과는 진행이 다른 재훈련과정을 필자가 1968~1969년에 미국 하와이大學 東西文化센타에서 실시하여 참가 한바 있어 그 내용을 소개키로 하겠다. 이것은 이른바 Pilot project라 하여 1960년 일본에서 개최된 박물관관계 유네스코 세미나에서 구체화하여 1967년부터 3차례에 걸쳐 유네스코와 럭펠라 三世재단의 후원아래 하와이大學 東西文化센타에서 주관하였다. 필자가 있을 때는 그 2차년도에 해당하여 人文系博物館은 Honolulu Acadeny of Arts에서, 自然系박물관은 Bishop Museum에 각기 지도교관을 지명하여 그를 중심으로 6개월의 과정이 끝난후 美本土와 맥시코등의 중요 박물관에 대한 Studies Tour가 있도록 짜여진 것이다.

필자는 東京國立博物館 필립핀國立博物館에서 온 두사람과 함께 Honolulu Acadeny of Arts에서 동 미술관의 副館長이던 Lewis w Story氏를 지도교관으로 하여 午前에는 Museology에 관한 내용을 토의형식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동 미술관의 각 課나 室에가서 담당자와 함께 일

하는 實習課程을 밟으며 기술을 익히면서 의견도 교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내 수강자는 제각기 자신들의 박물관에서 10년 가까운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의견 교환의 의미도 강하여 매우 폭넓은 기회를 가질수가 있었다.

같은 시기에 Bishop Museum에서도 세사람의 自然系박물관의 Trainee가 있었으므로 두 박물관의 두 계열별 Trainee가 자리를 함께 하는 기회도 있었다.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박물관의 역사와 기능
- " 기구와 임무
- " 종류
- 현대미술관에 관하여
- 특별전시회의 기획과 실제
- Museum Volunteer System
- 박물관법
- Museum Curator
- Museum Membership
- 박물관자료의 심의 평가
- 文化財의 海外流出
- Museum Trustee
- 박물관 시설
- 박물관의 전시
- 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봉사활동
- 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 1.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
 - 2. 학교교육과의 관련성
 - 3. 어린이를 위한 전시 및 활동
 - 4. Art School
- 박물관의 재정과 운영
- 소장자료의 안전관리 및 보존관리
- 박물관 안내책자와 전시실 안내
- 박물관의 출판물
- 사고방지책 및 안전도에 관한 시책
- 박물관 밖에서의 활동
- Museum Designer와 Curator의 관계
- 박물관 자료의 교환전시

- 박물관 전문직의 훈련문제
- 박물관의 成人教育활동
 - 강연회 토론회 야간공개등
- 박물관과 관광사업과의 관계
- 연구기관으로서의 박물관
- 여가선용 장소로서의 박물관
- 박물관 도서실의 관리 운영
- 박물관 자료의 수송
- 소정자료의 분류 목록
- Museum Shop 운영
- 대여유물의 관리
- 순회전시
- 과학기재를 이용한 자료의 감정

그밖에 사진촬영 현상 인화에 관한 실기 크리마스박물관 행사를 직접 작업하여 年例의 특별전시회의 준비나 전시 개관행사등에 직원과 함께 참여 작업케 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3 사람이 기획하여 「아세아풍속전시회」를 개최하여 마치 졸업작품을 하듯 모든 것을 Trainee가 주관하였다. Volunteer Docent에 대한 교육자료작성까지 우리들이 직접 완료하였다.

Museography나 Museology의 區分이 확연하지 않고 실습도 체계적이라기 보다는 각 담당 課나 室에서의 사정이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이미 박물관에서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별 문제는 느끼지 않고 치루어 볼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담당교판의 치밀한 계획과 책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거의 전생애를 한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익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게하는 성과도 가져오는 것 같았다.

이상은 미국에서도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며 대체로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의 재교육을 위한 세미나등을 개최하고 있는데 역시 주가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시기술
2. 박물관 운영관리
3. 소장품의 관리와 보존기술
4. 학예적 담당업무실기
5. 교육관계 업무
6. 안내 정보전달

등이 주축이 되는데 대체로 교과과정이나 실기내용에는 대등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만 그 실시방법이 짧은 기간에 集中的으로 실시하는가 약간의 기간을 두고 특정박물관에서

강의와 토론 실기를 병행해서 실시하는가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짧은 기간에 集中的으로 실시할 경우 특히 實技面에서는 作爲的인 기술습득이 되어 形式化할 우려가 많이 있어 좀더 시간적인 계획이 세워져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때의 성과는 지도교관의 역량이 많이 작용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 문제점일 수도 있다.

三、대학박물관과 연구직양성

박물관의 기능이 연구기관이라 할지라도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반영되어야 하고 사회교육기관이라고 정의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연구라는 행위의 결과가 깔려 있어야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이미 강조한바 있다. 바꾸어 말하면 박물관은 특수한 연구기관이며 특수한 교육기관이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대학박물관은 글자 그대로 교육기관이며 동시에 연구기관임이 분명해진다.

우리나라의 대학박물관은 일찍부터 두드러진 존재로 알려져 왔으며 특히 연구기관으로서의 활동은 매우 주목할만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는 奏弘變教授가 이미 古文化 21輯(1982. 12)「韓國大學博物館의 회고와 전망」에 잘 소개한바 있으며 장차의 바람직한 方向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大學博物館은 특히 어려운 여전아래에서도 연구업적이 뛰어나 충실히 그 기능을 수행하여 왔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능이 지나치게 대학 자체의 연구 기능에만 치우쳐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에는 미진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학박물관에 따라서는 특별전시회나 사회교육활동 기능에도 눈을 돌려 꾸준히 이행한 곳도 있으며 해마다 실시되는 대학박물관 연합회의 활동은 매우 팔목할만한 일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엄밀히 말해서 대학박물관의 연구기능은 대학으로서의 연구기능과 박물관으로서의 연구기능이 요구된다. 일찌기 L.V.Coleman은 「College and University Museum」(The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1942)에서 박물관은 「An Instrument of Teaching or Research or of Both」라고 말한바 있다. 여기에서의 Teaching이란 의미는 대학교육을, Research는 大學의 研究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박물관, 특히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一般公家을 위한 박물관이 적은 형편에서는 대학박물관이 일반公共박물관의 기능을 분담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대학교육 그자체도 公開大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해야하는 현실임을 생각할 때 대학박물관은 그 가장 좋은 기관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박물관의 歷史를 살펴보면 박물관을 일반에게 公開한 최초의 기관은 Oxford大學의 Ashmolean 박물관이었다. 즉 문예부흥기를 거친 유럽대륙에서는 印度航路의 개통, 아메리카대륙의 발견, 殖

民地政策으로 박물관 관계자료의 수집 열이 높아져 막대한 수집품이 集中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망 매매등으로 散逸하거나 대학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대수장가 Elias Ashmole의 것이었다. 원래 그의 차료는 Tradescant 父子의 막대한 수집품을 인수하고 자신이 모은 工藝品 民族學 人類學 考古學 관계 자료가 합해져 구성된 당시 유럽 최대의 수집품 이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 Oxford대학에서는 1683년에 박물관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한 것이다.

이러한 歷史的 사실은 대학박물관이 결코 대학에서의 구실만으로 가능이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현실은 대학박물관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강력히 요구된다.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이 이정도로 확충하게 된 것은 교육기준령에서 종합대학에 박물관설치를 의무화시킨 규정이 크게 작용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마치 영국에서의 세계최초로 공포한 박물관법이 작용한 것과 크게 다를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박물관설치를 의무화시킨 그 강제성 때문에 형식적으로 박물관을 설치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탕이 되어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게다가 일찍부터 박물관사업에 관심을 기울인 대학이 적지 않았음에 비추어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은 우리나라 박물관의 특성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最初의 박물관법에서 대학박물관에 대한 조항이, 그것도 진흥확충을 위한 지원대책이 빠진 사실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학박물관의 독립된 전문과 대학박물관으로서의 특성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대학박물관은 대학교육을 위한 시설과 박물관으로서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둘째 재정상으로 독립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박물관자료나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비가 計上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도 없는 일이다.

셋째 전문직으로 하여금 박물관을 운영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전혀 다른 分野의 교수가 단지 하나의 보직으로 생각하여 관리자가 된다는 것은 다시 검토해야 할 문제점이 될 것이다.

넷째 상설 개관이 불가능하다면 일정한 날을 정하여 (週一내지 二회) 일반에게도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관계학문분야에 관해서는 박물관내에서 직접 강의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겠다.

여섯째 자료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관계도서의 활용도 박물관내에서 동시에 이용하도록 대학도서관에서의 장기대출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小論에서 관계가 있는 전문적 양성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대학과 대학박물관은 관련학과의 전공학생 이외에도 박물관 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Museology의 강좌를 개설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문교부에서 지정하는 대학이 Museology 이론과 또한 직접 연결되는 사회교육 시청각교육등의 강의를 실시하고 이것을 이수한 학생은 각기 전공에 따라 부속박물관이나 또는 다른 박물관에서 Museography에 관한 실기 실습을 실

시하여 단위를 획득케 한다. 그리하여 교직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교생실습등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획득하듯 박물관 전문직 자격을 부여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더 나아가 특정한 어떤 박물관과 유대를 갖고 중간 레벨의 전문직 재교육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면 박물관 전문가의 양성이 공개대학이나 통신대학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한 결과라고 해석할수가 있을 것이다.

四、맺는말

이 小考에서 필자는 學藝職員이라는 박물관법상의 용어 이외에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람, 전문직 Curator 등등 몇가지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여 박물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은 비단 전문직 뿐만 아니라 몇개의 그룹으로 형성된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요원, 병원에서의 의사와 같은 구성원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學藝職員 즉 Curatorial-staff이다. 그러나 그들만으로는 결코 박물관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즉 관장과 사무직이 필요하고 안내원 보조원 그리고 기능직에서 수위직 청소직 매표 수표원 전문관리를 위한 기술직(전기 건물 위생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이들은 모두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기관, 특수한 사업에 둉쳐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직 즉 Curatorial staff 이외에도 모든 요원은 특수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사무직 행정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른바 문화행정, 가능하다면 박물관 행정의 요원으로 자격이 갖추어지기를 희망한다.

그밖에 전문직은 일반적으로 Curator, Keeper, Museum Worker 등으로 부르나 좀더 세분화하여 Curator, Educator, Conservator, Museum Instructor, Museologist 등으로 나라나 박물관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기도 하고 세분화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박물관법에 따라 학예연구직 학예직원이라 하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면에서는 순수한 학예연구직 즉 Curator 이외에 Educator, Conservator가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또 Curator라 할지라도 그 적절한 용어가 매우 어려워 人文系博物館에서는 學藝研究職으로 하되 박물관 성격에 따라서는 山林研究職 또는 農林研究職 등 自然系박물관은 다시 세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學藝職 또는 전문직이 박물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Librarian, Museum Designer, 카메라맨등 모두가 박물관의 중요한 구성원이 된다.

그러므로 이 小考에서는 엄격히 말해서 Curator 즉 학술연구직 위주의 전문직 양성과 재훈련, 자격등을 다루었으며 박물관을 움직이는 사람 모두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글은 1985. 5. 17 한국대학박물관협회에서의 강연내용을 엮은 것임.